

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2. 8.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의 인권문화 조성 및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호서대학교 인권센터” (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폭언·폭력·갑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성적(性的) 언동과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性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접근, 편지, 전화, 문자, 컴퓨터통신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5. “갑질”이란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2차 가해”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위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인권침해”란 위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8.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9.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10.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1.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2.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13.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

의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4.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본교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5. “구성원”이란 학교법인 호서학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인권센터의 독립성 등) ① 인권센터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획처는 인권센터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인권센터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센터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호서학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5조(센터장) ①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학내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센터에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상담위원 등) ① 센터에는 조사·상담을 위해 상담위원을 두며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② 상담위원은 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
2.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 사건 조사, 조정 및 처리
3. 인권침해 등 사건 신고인 및 피해자 보호
4. 인권 관련 교육
5. 각종 폭력예방 교육
6. 기타 학내 인권과 관련한 업무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그 임기는 센터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교 구성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센터 직원이 간사를 겸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센터의 기본사업·운영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본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개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규정 및 관련 세칙의 제·개정
5.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자문위원)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사건의 처리

제12조(신고 및 상담 등)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는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신고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완료 후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피신고인 측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 기타 화해를 중재할 수 있다.
- ⑤ 상담 및 조사 시에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 상담 및 조사 등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⑥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법무실로 이첩한다.

⑦ 사건의 조사 및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 접수 후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③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피신고자가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심의위원회

제16조(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후 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교내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 중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직원 또는 학생일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직원위원 2인 또는 학생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특정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된 사건의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2.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의결
3. 기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
4.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담위원을 원칙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센터에 보관한다.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심의과정 중에 신고인, 피신고인 등 사건 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시정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2개 이상 병과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2.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등 권고) ①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 등 권한있는 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20조의 시정조치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법무실로부터 법적 검토, 법무실로의 사건 이첩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가중된 시정조치 또는 가중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총장 등 권한있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관계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3.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제23조(결정의 통지 등) ①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 정한 결정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정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절차나 심의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의결을 한다. 다만,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의결보다 가해자에게 불리한 재의결을 할 수 없다.

③ 이의신청과 재의결 절차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6장 사건의 종결

제25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는 신고된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및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의 종결)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조사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7장 보칙

제27조(사건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③ 사건관계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운영세칙 등) ① 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은 학칙 기타 법령에 따른다.

부칙(2022. 8. 25)

제1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본 규정의 제정과 함께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